#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73

발의연월일: 2022. 8. 30.

발 의 자:이달곤·박성민·이명수

박수영 · 김용판 · 박덕흠

하영제 · 배준영 · 윤두현

조해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20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처리를 위해 장묘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46.8%에 이르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장묘처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있으나, 동물장묘업 등록을 위한 시설, 환경, 운영 등의 요건 충족이어려워 현행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장묘업체(이 법의 전부개정으로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변경되었음)는 전국에 60여 개에 불과한실정임.

이로 인하여 무등록업체가 난립하여 무분별한 광고로 반려인들을 현혹하고 있음에 따라 반려인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동물 장묘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장묘시설의 편리한 이용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무등록업체가 등록을 한 동물장묘업체와 제휴를 맺고 해당 시

설을 이용하여 장묘처리를 하는 편법 운영을 하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동물장묘업체에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해지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 묘시설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묘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전국의 동물장묘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동물장묘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동물장묘 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72조의2 신설).
- 나.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에 다른 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여 동물을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78조제5항제3호 신설).
- 다. 동물장묘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려는 소유자등을 동물장묘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78조의2 신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2조의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예약·이용·관리의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장묘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국의 동물장묘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 2. 동물장묘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 3. 동물장묘 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

여 동물을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동물장묘의 알선 금지) 동물장묘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등을 동물장묘 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제5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소유자등을 동물장묘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 부 칙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법률
<u> &lt;신 설&gt;</u>	제72조의2(장묘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예약ㆍ이용ㆍ관리의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
	보시스템(이하 "장묘정보시스
	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u>수 있다.</u>
	② 장묘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u>야 한다.</u>
	1. 전국의 동물장묘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2. 동물장묘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3. 동물장묘 절차 등에 관한 정
	보 제공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u>ᢐᢅ</u> }-

-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④ (생 략)
  - ⑤ 동물장묘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⑥ (생략) <신 설>

제97조(벌칙) ①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1. (생략) <신 설>

③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현행과 같음)

(5)	 	 	 	

- 1. 2. (현행과 같음)
- 3. 다른 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 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여 동물을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 ⑥ (현행과 같음)

제78조의2(동물장묘의 알선 금지) 동물장묘업자가 아닌 자는 영 업을 목적으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려는 소유자등을 동물장 묘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5	-
	_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소유자등을
	동물장묘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